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5045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04-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17]



[학교앞 옛날떡볶이]

정 보 공 개 서

학교앞옛날떡볶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학교앞옛날떡볶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경기도 시흥시 장곡로30, 115, 116호]

[대표전화번호: 031-404-7494]

[대표팩스번호: 0504-295-7499]

[이메일 주소: aa98467499@gmail.com]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학교앞옛날 떡볶이	학교앞옛날떡볶이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30, 115,116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3.12.13	정하나	031-404-7494	0504-295-7499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562-22-0188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해당사항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학교앞옛날떡볶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학교앞옛날떡볶이	학교 정문앞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을 기화로 지음
상 호	학교앞옛날떡볶이 OO점	
상표(서비스표)③		상표출원번호: 40-2025-0010594
광 고	상동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	-	-	6,265	-	-
2024년	-	-	-	186,185	-	-

당사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이에 해당연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신고서를 첨부합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하나	대표	2018.06.~2024.1.	에바다떡볶이사장	운영전반
			2023.12 ~	학교앞옛날떡볶이	운영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
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	------	--------------	----------------	----------------	-------------

		여부(일자)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사용	2024.11.20 출원 2025.01.16 공고	출원 40202402131 33 등록전	정하나	등록일로 부터 10년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사업 현황

1. 학교앞옛날떡볶이를 시작한 날: 가맹사업 시행 전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12월 13일)

2. 학교앞옛날떡볶이 연혁

가맹사업시작전으로 가맹사업에 관한 이력 없음

3. 학교앞옛날떡볶이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학교앞옛날떡볶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식	떡볶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학교앞떡볶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1	-	1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학교앞옛날떡볶이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학교앞옛날떡볶이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학교앞옛날떡볶이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개시전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서울	-	해당없음	-	-	-	-	-	
부산	-	해당없음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인천	-	해당없음	-	-	-	-	-	
광주	-	해당없음	-	-	-	-	-	
대전	-	해당없음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경기	-	해당없음	-	-	-	-	-	
강원	-	해당없음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충남	-	해당없음	-	-	-	-	-	
전북	-	해당없음	-	-	-	-	-	
전남	-	해당없음	-	-	-	-	-	
경북	-	해당없음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8.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학교앞옛날떡볶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가맹사업전	가맹사업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는 가맹사업 개시전으로 **학교앞옛날떡볶이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이전 사업연도에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KB국민은행	인천논현지점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아이플렉스 214호	1599-99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KB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학교앞옛날떡볶이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관계로 보상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학교앞 옛날떡볶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1,0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혹은 영업이 개시되었다면 즉시	교육시작이전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실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10,000	계약후 20일 이내 혹은 초도물품 주문이전 중 먼저도래 하는 일시	초도 물품 주문이전	주문되거나 배송된 물품의 대금은 반환불가	보증보험 대체가능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보증금	10,0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초도 물품 발주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에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관촉비 등 계속가맹금 및 상품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직영점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에서 산정. 보증보험대체가능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가맹금 내역	금액(단위: 천원)
가입비	5,500
최초교육비	5,500
보증금	10,000
합계	21,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10평 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2,260	3,536			
주방설비	협력업체	2,900	290	별도협의	미공급시	협력업체 계약시 변경가능
주방집기		6,760	676			협력업체 계약시 변경가능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16,500	1,650			33㎡ 기준 3.3㎡ 늘어날

	(미지정)					때마다 1,650천 원 추가부담
간판 등		1,500	-			
초도물품 (기성상품)	협력업체	4,000	300			협력업체 계약시 변경가능
초도물품 (전용상품)	가맹본부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600	60			소모품비, 사업자등록 등 대행 대가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점포의 운영형태 및 추가되는 요청사항에 따라 지불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후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 ※ 점포임대를 위한 부동산 비용 (보증금 및 권리금)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 ※ 철거, 냉난방기, 전기/가스 증성, 덕트공사, 소방설비, 화장실, 외부공사(테라스, 자동문, 창호 등), 주방순간온수기, 보일러, 워크인, 어닝, 용도변경, 각종 인허가, 지방체제비 등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1,100,000원(부가세포함)과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55,000원(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담당자 (전화:031-404-7494)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매장 운영을 위한 허가 불능 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건강진단 결과서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별첨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 계약시 개별
협의를 거쳐 개점전까지 가맹금을 완납할 수 있습니다. (개별상황에 따라 본사가
분납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
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다음 월 10일	-	반환되지 않음	매월 1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상호협의	별도약정	-	반환되지 않음	미 통지시 본사부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상호협의	별도약정	-	반환되지 않음	미 통지시 본사부담

보수 및 지도 교육비		가맹본부	교육실비 (회당 1,100 이하)	실시 14일이전	-	반환되지 않음	교육필요 시만 발생 Ⅷ.-1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가맹본부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특정된 본부 부담분 제외 금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와 별도협의	-	-	경영방침, 트렌드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가능함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 수비용	가맹 본부 협력 업체 시공	협력업체 외 협력업체 (미지정)	가맹본부와 별도 협의를 통하여 특정된 본부 부담분 제외 금액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와 별도약정	-	-	교체 및 보수의 필요시, 과실여 부에 따라 비용 지급책임이 결 정되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본부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가맹 점사 업자 자율 시공	자율선택	가맹점사업자 지정업체와 협의	가맹점사업자 지정업체와 협의	-	-	가맹점사업자 자율시공시 시 공업자와 개별 협의하여야함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Ⅷ.-1참조
POS사용료		협력업체 (미지정)	개별업체와 별도협의	별도약정	-	-	설치장비 및 수량에 따라 상이, 가맹계약시 협력업체 안내
POS 유지보수료							
CCTV등 유지보수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지급의 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이자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 무의 지체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없음 (가맹점 미존재)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경영감독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등 점검	월 1회	문의: 개발팀 (전화:031-404-7494)
회계보고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등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출	연 1회	문의: 개발팀 (전화:031-404-7494)

감독의 권한 및 점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가맹계약서 제22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별도합의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의 지출	점포이전 합의시
갱신 가맹비	없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학교앞 옛날떡볶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가맹계약서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

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학교앞옛날떡볶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가맹사업전으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책정할 수 없어, 최신의 제품의 공급내역과 가격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별첨 3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학교앞옛날떡볶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학교앞떡볶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2024년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떡볶이	기재된 품목이외에 판매 금지	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부터: 서면 시정요구 서면시정요 구 2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순대			
내장			
즉석떡볶이 2인세트			
즉석떡볶이 3인세트			
왕김말이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야끼만두 튀김			
새우튀김			
모듬튀김			
부산미도어묵			
떡꼬치			
피카츄			
소떡소떡			
A세트			
B세트			
김밥			
라면			
쫄면			
날치알주먹밥			
참치주먹밥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고객	소스 등 원자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1인분, 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떡볶이	3500	변경시 POS 등으로 통지	정보공개서 등록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가격표 판매가격 변동시 POS등을 통하여 사전고지
순대	4500		
내장	600		
즉석떡볶이 2인세트	15000		
즉석떡볶이 3인세트	12000		
왕김말이	1500		
오징어 튀김	800		
고구마 튀김	500		
야끼만두 튀김	500		
새우 튀김	500		
모듬튀김	7000		
부산미도어묵	800		
떡꼬치	1500		
피카츄	2000		
소떡소떡	2500		
A세트	22000		
B세트	14000		
김밥	3500		
라면	4000		
쫄면	6000		
날치알주먹밥	4000		
참치주먹밥	4000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떡볶이등 분식을 주로 제공하는 기타 요식업	학교앞옛날떡볶이	해당사항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k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점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학교앞옛날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별도 내용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10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씩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별계약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개별계약의 명시된 계약기간을 우선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건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학교앞옛날떡볶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0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경영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37조 7항
○ 관련 법의 제정혹은 개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서의 조항이 법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	
○ 계약 갱신시 수정을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6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승인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팀 전화:031-404-7494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획득하였을 시에만 가능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상속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 및 미성년자 및 피성년 후견인등이 아닌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 신청 → 당사검토→승인여부통지→ 가맹계약 명의변경→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	-	-	-
영업양도	본사승인을 통해서만 가능	모든 권리의무	사업자 신청 → 당사검토→승인여부통지→ 가맹계약 명의변경→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지역에서 귀하가 학교앞 옛날떡볶이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분식 특히 떡볶이, 순대, 튀김을 주된 메뉴로 하는 식당업	절대 불가 사항으로 절차 없음	가맹팀 전화:031-404-749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학교앞옛날떡볶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am ~ 8:00 pm	주5일 이상, 월 19일 이상	가맹팀 전화:031-404-749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점별 필수 운영인원	직접근무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본사 교육이수)	대체가능인력이 없을시 본사에 사전통보 요망

가맹점주가 영업장에 반드시 근무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주가 상주하는 것을 권장하며, 영업장에 개별 매장별 규모에 따른 권장 종업원 수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가맹팀, 권한을 위임받은자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본사 가맹팀, 권한을 위임받은자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본사 가맹팀, 권한을 위임받은자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학교앞 옛날떡볶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

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 70%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1. 광고 계획 공고 (광고비 용, 가맹점 부담, 분담 비 율등을 포함하여 문서, POS등을 통하여 제시) → 가맹점의 50%가 동의 할 경우 광고 진행	가맹계약서 제25조 [광고] 참조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2. 위 광고계획에 동의 하거 나 별도의 약정으로 광고 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 는 당해 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 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다음분기 첫달의 말 일까지 가맹본부가 명세 서 첨부 하여 통지하고 → 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 한다.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가맹점 모집 광고의 경우 광 고물 부착 협조	
판촉행사	전체 점포행사	판촉행사 비용 및 할인 비용의 30%	판촉행사 비용 및 할인비용의 70%	판촉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 액 등 제시) → 전체 가맹점 의 70% 이상 동의 → 전체 가맹점 시행	가맹계약서 제26조 [판촉] 참조
	개별점 행사	없음	가맹점 부담 원칙	70% 이상 동의를 없을 경우 비용부담 동의한 가맹점만 참가	본사 사전승인 필수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 한 할인금액의 30%	서비스로 인한 할 인 금 액 의 70%	촉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등 제시) →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 → 전체 가 맹점 시행 70% 이상 동의를 없을 경우 비용부담 동의한 가맹점만 참가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고하고 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

를 구하여야 합니다. (전체 가맹점사업자 50%의 동의를 획득하지 모하면 광고 시행 철회)

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로 할인판매, 경품제공, 이벤트, 제휴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판촉 활동 또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판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경영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촉 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 및 판촉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비율 및 부담 한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를 실시하는 그 개별약정의 적용이 우선되며 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홍보, 판촉행사 및 제휴서비스등의 참가에 상기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 가맹본부는 당해 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다음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가맹본부는 사업연도중 가맹점사업자가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한 광고 등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해당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해당 광고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집행한 금액 및 가맹사업자등이 부담한 총액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합니다.

바)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매체별 광고 횟수, 광고단가, 판촉 등 세부산출 근거가 포함된 광고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을 잡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 제25조 및 제26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일천만(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제38조 1항 및 2항에 속하는 사유(가맹점사업자의 귀책)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써 금 일천만(1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혹은 인터넷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사업의 개괄적 정보 제공 - 가맹희망자 개인상담	D- 43	
점포개발(위치선정)	- 부동산 방문/ 물건 확인 - 상권확인 - 희망 물건에 대한 사전 상권분석 - 본사 적합성 판단 - 승인여부 내부결정	D-40 ~25	
최종 협의	- 최종 협의	D-40 ~25	
가맹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후 계약체결	D-25	
가맹금 등 예치	- 지정은행에 가맹비등 예치	D-25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 업체 등 선정 - 점포 실측/설계/공사비등 비용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5 ~ 22	
인허가 문의/취득	- 인허가 기관과 협의 - 인허가 취득 - 인허가 사항에의한 도면 변경 필요시 협의 및 변경확정	D-25 ~ 22	
인테리어 등 공사	- 공사 실시 (인테리어, 설비 및 전체 집 기 포함)	D-21 ~ 2(20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 이외의 비용 참조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 교육평가 실시 (미이수시 재교육)	D-16 ~ 2(14일)	VIII. 교육·훈련 에 대한 설

			명, 2. 교육 비용 참조
점포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항목	상세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1. 간판교체 비용 2.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1.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 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협의절차	1. 가맹본부의 권유(서면 혹은 이메일) → 가맹점의 동의(서면 혹은 이메일)→환경개선 시행 2. 가맹점 자진신청→ 가맹본부 검토 및 승인(서면 혹은 이메일) → 환경개선 시행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상시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시 상권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가 요청한 경우	가맹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대상 및 내용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절차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부담;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연락처	문의 : 가맹팀 031-404-7494	문의: 가맹팀 031-404-7494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학교앞 옛날떡볶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담당 직원을 통한 상담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상시적 지원제도는 운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학교앞옛날떡볶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혹은 개점 7일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신메뉴 개발등 교육이수 통지 후 14일이내	필수 교육
지도 교육	클레임 발생시 대처, 문제 상황 재발 발생 등	실습교육	고객 클레임등 지도상황 발생 통지 후 14일 이내	소요발생시 필수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학교앞옛날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4일(성취도에 따라 조정가능)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개발과정에 따라 상이함	실비부담	필수적으로 이수
지도 교육	문제상황 등에 따라 상이함	실비부담	필수적으로 이수

※ 신규 교육은 별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귀하는 본인을 제외한 1인의 직

원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사정으로 신규교육에 기본인원 2인이 신규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2인을 초과하는 추가 인원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당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신규교육 기본인원 2인외 추가 인원이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할시에는 추가 인원 1인당 부가세를 포함하여 백십만원 (₩1,100,00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신규교육의 결과 성적이 당사가 정한 일정한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되는 경우 2회의 재교육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 비용은 1인 1회당 재교육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백십만원 (₩1,100,000)입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0조 3항에 따라 개점일시가 늦춰지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 38조 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혹은 적어도 개점 7일 전까지는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수 및 지도교육은 교육사항 발생시 실시 14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장소 및 일정을 고지 합니다. 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 제37조 2항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본점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30, 115,116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2023년12월13일 개점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86,18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 : 학교앞옛날떡볶이 2023 ~2024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표지 견본	
출원번호	40-2025-0010594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등록진 (현재 출원심사 통과 후 공고상태)
존속기간 (예정) 만료일	등록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식당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포장판매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라면전문점업, 식당체인업, 식음료 제공서비스업, 카페테리아서비스업
등록권리자	정하나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간판, 상징물, 홍보물, 집기 비품, 문구류 등에 표시

(3)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4) 영업표지의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지역 내로 한정됨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 개점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집기의 목록 (구입권장)

(지정거래상대방 변경가능)

지정거래상대방 : 명보종합주방,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62,101호

a. 주방설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b. 주방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5] 가맹금예치 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학교앞옛날떡볶이 점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학교앞옛날떡볶이		
	*사업자번호:562-22-01886		
	성명(대표자) 정하나		
	주소(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30, 115,116호	전화번호 031-404-7494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KB국민은행 621501-04-249999 계좌주: 정하나(학교앞 옛날떡볶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6]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점포예정지역		브랜드명		
구분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